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26520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 대통령령제26521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 대통령령제26522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
- 대통령령제26523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
- 대통령령제26524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6
- 대통령령제26525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7
- 대통령령제26526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4
- 대통령령제26527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0
- 대통령령제2652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0
- 대통령령제26529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1
- 대통령령제26530호(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35

【부 령 령】

- 여성가족부령제78호(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37
- 문화체육관광부령제218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7

【국무총리훈령】

- 국무총리훈령제652호(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41

【고 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2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45
- 법무부고시제2015-287호(국적회복) 46
- 법무부고시제2015-288호(귀화허가) 50
- 국방부고시제2015-295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 국방부고시제2015-296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2
- 국방부고시제2015-297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3
- 국방부고시제2015-298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53

(이면 계속)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5년 9월 15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윤 성 규

환 경 부 장 관

●대통령령 제2652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인”을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으로 한다.

제7조제1호가목 중 “검정관련”을 “검정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 등의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하도록 인력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